

『2018 회계연도 광주시 통합 결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광주시장

2018 회계연도 광주시 통합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25일 ~ 5월 14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은 채 (광주시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유 지 호 (전 광주시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유 동 철 (전 광주시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이 수 천 (세무사)
- 검사위원 : 김 상 배 (세무사)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	1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	2
III	결산검사 경과	-----	3
IV	결산총평	-----	5
V	결산검사 결과	-----	6
VI	주요 지적사항	-----	26

1. 결산검사 의견서

광주시장 귀하

2019년 5월 1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시 의회로부터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광주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광주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세출결산(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은채	서명
검사위원	유지호	서명
검사위원	유동철	서명
검사위원	이수천	서명
검사위원	김상배	서명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1. 기본방향

가. 재정확보방안 모색

- (1) 지방 자주재원 세원의 근간이 되는 세원의 추적 및 징수를 위한 세무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 (2) 지방세의 과세처분 및 체납세액 관리의 적정성 여부

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1)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 (2) 보조금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 (3) 재정운영의 수지·균형유지
- (4) 투자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형평성 확보
- (5) 채권·채권관리의 적정성 여부
- (6) 행정서비스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 (7) 인적자원관리의 능률성 및 사기 진작 대책

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

- (1) 은닉 재산 발굴과 공유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 (2) 물품 수급의 효율성 확보와 운용관리

2. 결산검사 범위

가. 대상기간 : 2018. 1. 1.~ 2018. 12. 31.

나. 결산검사 내용

- (1)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
- (2) 기금결산
- (3) 재무결산(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 첨부서류(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 결산사항)
- (6) 금고의 결산

II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4. 25.(목) ~ 5. 14.(화)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이 은 채	- 결산관련 서류 및 장부정리 등	2019. 3. 19. 위촉
검사위원	유 지 호	- 세입분야 등	“
검사위원	유 동 철	- 기금, 특별회계, 물품관리 등	“
검사위원	이 수 천	-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등	“
검사위원	김 상 배	- 보조금 및 공유재산 등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가. 결산검사 관계자 회의

- 일 시 : 2019. 3. 19.(화) 13: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검사기간 결정 : 2019. 4. 25. ~ 2019. 5. 14.(20일간)
 - 위원별 담당업무 협의 및 결산검사 방향 결정
 - 결산검사일정 결정

일 정	결 산 검 사 내 용	비 고
2019. 4. 25. ~ 4. 28.	○ 재정상황 파악, 회계별 세입·세출 계수확인 ○ 제반장부 및 증빙서 열람	
2019. 4. 29. ~ 5. 7.	○ 결산검사 분야별 수집자료 검토 ○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검사 실시	
2019. 5. 8. ~ 5. 14.	○ 결산검사 결과 보완 및 종합검토 의견조정 ○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및 검토	

나. 결산검사 진행

- 대표위원의 책임으로 결산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
- 결산검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제반장부 및 증빙서 등을 열람하여 검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토의를 통하여 의견 조정
- 의문이 있거나 위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협의회 개최

다. 1차 결산검사 결과 의견 조정회의

- 일 시 : 2019. 5. 8.(수)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의견취합 및 조정·보완 및 감사의견서 초안 방향 제시

라. 2차 결산검사 결과 의견 조정회의

- 일 시 : 2019. 5. 13.(월)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감사의견서 초안 확인 및 감사의견 조정

마. 3차 결산검사 결과 종합검토 회의

- 일 시 : 2019. 5. 15.(수)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결과 종합 검토 및 의견서 작성

IV. 결산총평

○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 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세입분야의 경우

2018 회계연도의 세입은 1조 4,726억 8,55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4억 1,713만 5천원(14.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초과세입액은 258억 5,332만 6천원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증가에 기인합니다. 시는 당해연도의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간의 징수실적, 인구증가, 경제여건 등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세출분야의 경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8%에 해당하는 1조 645억 1,409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대비 960억 3,101만 7천원(9.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715억 6,587만 1천원, 수송 및 교통 1,463억 1,006만 7천원이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으로 86억 5,896만 5천원(82.0%증가)으로 전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369억 2,158만 6천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사업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여건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광주시는 본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시어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V. 결산검사 결과

1. 광주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 입	559,613,649	643,940,277	818,119,268	1,018,247,036	1,127,368,893
	세 출	487,418,175	524,242,527	596,950,516	796,532,887	875,862,944
	결산상잉여금	72,195,474	119,697,750	221,168,752	221,714,149	251,505,949
특별회계	세 입	160,179,407	183,110,466	205,598,340	270,021,427	345,316,705
	세 출	126,052,500	136,626,307	134,208,410	171,950,194	188,651,154
	결산상 잉여금	34,126,907	46,484,160	71,389,930	98,071,233	156,665,551
기 금	수 입	40,817,881	28,064,996	18,761,816	16,796,612	18,025,598
	지 출	40,653,104	28,064,996	18,160,336	16,796,612	18,025,598
	결산상 잉여금	164,777	0	601,480	0	0
총 계	세입(수입)	760,610,936	855,115,739	1,042,479,424	1,305,065,075	1,490,711,196
	세출(지출)	654,123,778	688,933,829	749,319,262	985,279,693	1,082,539,696
	결산상 잉여금	106,487,158	166,181,910	293,160,162	319,785,382	408,171,500

2018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게 된 것은 세수증가로 세입이 증가된 데 기인하며,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년도에 2,324천원이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3,375,188,280	18,125,764	3,357,062,516	1,026,350,264	1,031,368,486	△5,018,222	
2017년	3,273,204,033	49,017,919	3,224,186,114	890,144,954	752,716,754	137,428,200	
증 감	101,984,247	△30,892,155	132,876,402	136,205,310	278,651,732	△142,446,422	

- 2018년 순자산은 3조 3,570억 6,25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328억 7,640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81억 2,57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08억 9,215만 5천원 감소하였다.
- 재정운영결과 비용은 전년대비 2,786억 5,173만 2천원 증가, 수익은 1,362억 531만원 증가하여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424억 4,642만 2천원 감소하였다.
-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0.5%로 광주시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2. 세입 · 세출 결산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비 고 (순세계잉여금)
합 계	1,441,614,998	1,472,685,598	1,064,514,098	408,171,500	142,831,881
일반회계	1,101,515,567	1,127,368,893	875,862,944	251,505,949	62,774,912
특별회계	340,099,431	345,316,705	188,651,154	156,665,551	80,056,969

2017 회계연도	1,226,705,611	1,288,268,463	968,483,081	319,785,382	151,626,496
--------------	---------------	---------------	-------------	-------------	-------------

- 예산현액 1조 4,416억 1,499만 8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4,726억 8,559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45억 1,409만 8천원이다.

- 세입 · 세출결산 차감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081억 7,15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등 2,653억 3,961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28억 3,188만 1천원이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납총액-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441,614,998	1,544,038,960	1,472,685,598	3,709,855	67,643,507
일반회계	1,101,515,567	1,192,424,155	1,127,368,893	3,709,855	61,345,407
특별회계	340,099,431	351,614,805	345,316,705	0	6,298,100
2017 회계연도	1,226,705,611	1,362,350,259	1,288,268,463	10,138,499	63,943,297

- 2018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1%인 1조 5,440억 3,896만원
 -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인 1조 4,726억 8,559만 8천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844억 1,713만 5천원 (14.3%) 증가하였다.
 - 불납결손액은 37억 985만 5천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하였다.
-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90.6%인 613억 4,540만 7천원이며,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54.7%인 335억 8,525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5.2%인 277억 6,015만 5천원이다.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9.4%인 62억 9,810만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가 각각 7억 4,802만 9천원, 31억 857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가 24억 4,149만 5천원이다.
- 수납액은 광주시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한다.

(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합 계	1,441,614,998	1,064,514,098	261,234,025	4,105,595	111,761,280
일반회계	1,101,515,567	875,862,944	185,141,952	3,589,085	36,921,586
특별회계	340,099,431	188,651,154	76,092,073	516,510	74,839,694
2017 회계연도	1,226,705,611	968,483,081	166,126,006	3,286,680	88,809,844

○ 2018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8%인 1조 645억 1,40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8.1%인 2,612억 3,402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7%인 1,117억 6,128만원이다.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33.0%인 369억 2,158만 6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9.3%인 104억 6,178만 4천원으로,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

-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 교통사업 특별회계 43억 125만 4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3만 2천원,
 -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6,130만 3천원,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95만 2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41억 8,541만 7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490만 3천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2만 5천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 2,933만 2천원
 - 광주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1억 7,066만 5천원이다.

○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은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명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408,171,500	44,586,106	4,279,740	212,368,179	4,105,595	142,831,881
일반회계	251,505,949	33,463,664	4,119,499	147,558,789	3,589,085	62,774,912
특별회계	156,665,551	11,122,442	160,241	6,480,9390	516,510	80,056,969
2017 회계연도	319,785,382 (1,253,800)	27,251,585	4,667,045	132,953,576 (1,253,800)	3,286,680	151,626,496

※ () 자금 없는 이월금액은 미포함

○ 다음연도 주요 이월사업 내역은,

【주요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취약지역 정비사업	8,145,000	5,413,287	2,731,713	0	동절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하천유지관리	5,893,531	3,152,898	2,732,853	7,780	동절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경안천 제방도로 돌레길 조성	1,900,000	0	1,900,000	0	동절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주요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양벌리 세양아파트 앞(소로-1-37호선) 도로개설공사	912,076	147,140	764,936	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이월
도로유지보수사업	1,600,000	927,841	599,063	73,096	분할납부 가능조건으로 '19.2.7일까지 납품 ('18.12.10일 계약체결)
도로유지보수사업	2,273,985	1,779,477	231,943	262,565	동절기 한파주의보 등 공사 및 용역이 일시중지

【주요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퇴촌농협 앞(대로3-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343,378	2,296,406	8,046,972	0	계속비사업
삼리~도웅간(면도101)도로 확포장공사	5,518,192	266,273	5,251,919	0	계속비사업
대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중로1-19호선) 도로개설공사	3,810,000	139,743	3,670,257	0	계속비사업

나. 일반회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101,515,567	1,192,424,155	1,127,368,893	3,709,855	61,345,407
결산확인액	1,101,515,567	1,192,424,155	1,127,368,893	3,709,855	61,345,407
차 액	0	0	0	0	0
2017 회계연도	961,684,691	1,086,062,333	1,018,247,036	9,924,985	57,890,312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조 1,273억 6,889만 3천원은 예산현액대비 102.3%로, 전년도(102.1%) 대비 0.2% 증가하였다. 초과수납된 258억 5,332만 6천원은 지방세 118억원, 세외수입 86억원, 의존수입이 53억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52억 증가(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수입 증가, 신규분양 등 주택 공급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이에 연계되는 양도소득세 증가), 재산세 32억 증가,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6억 증가
- 세외수입은 대단지 아파트 신축,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쓰레기봉투,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8억,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17억
- 의존수입은 부동산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이 26억원 증가함에 기인한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비율 95.3% 대비 0.8% 감소하였다.

○ 세입결산액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127,368,893	1,127,368,893	0

세입결산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 대비 징수결정비율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비율
2018년	1,101,515,567	1,192,424,155	1,127,368,893	3,709,855	108.2	94.5	0.3
2017년	961,684,691	1,086,062,333	1,018,247,036	9,924,985	112.9	93.8	0.9
증 감	139,830,876	106,361,822	109,121,857	△6,215,130	-	-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01,515,567	1,192,424,155	1,127,368,893	3,709,855	61,345,407	
지방세	244,498,000	292,512,424	256,323,029	2,604,143	33,585,252	
세외수입	소계	69,439,607	106,946,394	78,080,527	1,105,712	27,760,155
	경상적세외수입	29,014,052	34,497,060	34,142,420	0	354,640
	임시적세외수입	40,425,555	72,449,334	43,938,107	1,105,712	27,405,515
지방교부세	199,469,068	203,667,849	203,667,849	0	0	
조정교부금 등	106,678,485	109,293,876	109,293,876	0	0	
보조금	소계	249,132,431	247,678,003	247,678,003	0	0
	국고보조금등	174,673,038	173,775,405	173,775,405	0	0
	시·도비보조금등	74,459,393	73,902,598	73,902,598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소계	232,297,976	232,325,609	232,325,609	0	0
	보전수입등	222,940,315	222,967,949	222,967,949	0	0
	내부거래	9,357,661	9,357,660	9,357,660	0	0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결 산 액	988,169,036	133,346,471	1,101,515,557	875,882,944	185,141,952	3,589,085	36,921,586
결산확인액	988,169,036	133,346,471	1,101,515,557	875,882,944	185,141,952	3,589,085	36,921,586
차 액	0	0	0	0	0		0
2017 회계연도	830,182,343	131,502,348	961,684,691	796,532,887	133,374,104	2,796,472	28,981,228

○ 세출결산 개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5%에 해당하는 8,758억 6,294만 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851억 4,195만 2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334억 6,366만 4천원, 사고이월액은 41억 1,949만 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475억 5,878만 8천원이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되는 369억 2,158만 6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재정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161억원) 및 인건비 집행잔액(49억), 계속비사업 집행잔액(9억), 지급사유 미발생 등 이다.

세출예산 전용은 7건, 671,743천원으로 자치행정과 광주시 통리장협의회 행사 운영비, 문화관광과 광주시민의날 행사운영비 등 통계목 착오편성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다.

예비비사용액은 2건, 64,886천원으로 2018년 7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830천원과 도로사업과 민사소송 패소(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으로 54,056천원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75,862,944	875,862,944	0

세출결산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7년 지출액	2018년 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796,532,887	1,101,515,567	875,862,944	79.5	79,330,057	9.9
일반 공공행정	70,594,473	121,425,340	112,139,537	92.4	41,545,064	58.9
공공질서 및 안전	6,682,615	4,050,048	3,645,505	90.0	△3,037,110	△45.4
교육	8,885,750	13,997,375	11,824,265	84.5	2,938,515	33.1
문화 및 관광	41,095,988	42,768,072	32,091,432	75.0	△9,004,556	△21.9
환경보호	27,997,624	32,002,023	30,092,405	94.0	2,094,781	7.5
사회복지	234,821,242	276,759,675	271,565,871	98.1	36,744,629	15.6
보건	16,432,964	15,322,951	14,918,370	97.4	△1,514,594	△9.2
농림해양수산	23,981,474	34,401,346	31,222,323	90.8	7,240,849	30.2
산업·중소기업	4,758,513	9,066,140	8,658,965	95.5	3,900,452	82.0
수송 및 교통	154,787,633	286,365,086	146,310,067	51.1	△8,477,566	△5.5
국토 및 지역개발	110,648,128	130,834,763	99,790,657	76.3	△10,857,471	△9.8
기타	95,846,483	134,522,748	113,603,547	84.4	17,757,064	18.5

지출액은 전년대비 793,305만 7천원(9.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715억 6,587만 1천원, 수송 및 교통 1,463억 1,006만 7천원이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으로 86억 5,896만 5천원(82.%증가)으로 전체 0.9%를 차지하고 있다.

다. 특별회계(직영 공기업 포함)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40,099,431	351,614,805	345,316,705	0	6,298,100
공기업특별회계	229,789,537	237,381,354	233,524,750	0	3,856,604
상수도공기업	105,599,297	107,283,811	106,535,782	0	748,029
하수도공기업	124,190,240	130,097,543	126,988,968	0	3,108,575
기타특별회계	110,309,894	114,233,451	111,791,955	0	2,441,496
교통사업	8,103,448	11,387,254	8,945,758	0	2,441,496
의료급여기금	1,788,377	1,917,933	1,917,933	0	0
주민소득 지원사업	1,461,303	1,622,614	1,622,614	0	0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5,952	5,921	5,921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4,500	349,558	349,558	0	0
수질개선	40,571,911	40,722,979	40,722,979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01,975	503,164	503,164	0	0
기반시설	8,676	11,293	11,293	0	0
도시개발	6,229,332	6,231,544	6,231,544	0	0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10,590,776	10,610,707	10,610,707	0	0
근지암역세권 도시개발	10,166,152	10,214,440	10,214,440	0	0
송정지구 도시개발	30,587,492	30,656,044	30,656,044	0	0
결산확인액	340,099,431	351,614,805	345,316,705	0	6,298,10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은 3,453억 1,670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이다.

○ 세입 결산액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45,316,705	345,316,705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07,347,528	340,099,431	188,651,154	76,092,073	74,839,694
공기업특별회계	208,064,670	229,789,537	124,385,623	41,026,003	64,377,910
상수도공기업	95,439,471	105,599,297	66,742,222	12,809,562	26,047,513
하수도공기업	112,625,199	124,190,240	57,643,401	28,216,441	38,330,397
기타특별회계	99,282,858	110,309,894	64,265,531	35,066,070	10,461,784
교통사업	8,103,448	8,103,448	2,810,686	991,508	4,301,254
의료급여기금	1,788,377	1,788,377	1,762,127	0	2,933
주민소득 지원사업	1,461,303	1,461,303	0	0	1,461,303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5,952	5,952	0	0	5,95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4,500	294,500	260,341	22,500	0
수질개선	40,061,895	40,571,911	35,445,234	459,728	4,185,41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01,975	501,975	297,071	0	204,903
기반시설	8,676	8,676	8,651	0	25
도시개발	6,229,332	6,229,332	6,100,000	0	129,332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9,077,000	10,590,776	5,393,293	5,026,818	170,665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	5,960,400	10,166,152	4,042,483	6,123,669	
송정지구 도시개발	25,790,000	30,587,492	8,145,645	22,441,847	
결산확인액	307,347,528	340,099,431	188,651,154	76,092,073	74,839,694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55.4%이며, 이월액은 760억 9,20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22.3%이다. 불용액은 748억 3,969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2.0%이다.

○ 세출결산액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88,651,154	188,651,154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3.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합 계	45,096,138	△160,939	4,069,602	4,230,541	44,935,199
통합관리기금	18,622,776	△1,928,380	421,869	2,350,249	16,694,396
보훈기금	1,553,182	371	30,297	29,926	1,553,553
자활기금	1,790,497	△63,650	110,576	174,226	1,726,847
노인복지기금	1,743,677	3,076	33,981	30,905	1,746,753
양성평등기금	3,133,744	18,213	60,713	42,500	3,151,957
체육진흥기금	662,546	△2,176	12,824	15,000	660,370
식품진흥기금	523,959	177,762	492,394	314,632	701,7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7,544,207	△113,225	130,932	244,157	7,430,982
재난관리기금	7,646,811	1,442,445	2,324,257	881,812	9,089,256
농업인육성기금	1,418,846	7,406	27,679	20,273	1,426,252
옥외광고정비기금	455,893	297,219	424,080	126,861	753,112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49억 3,519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6,093만 9천원(0.3%)감소하였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자 산	3,273,204	3,375,188	101,984	
Ⅰ. 유 동 자 산	395,170	500,616	105,446	14.83
Ⅱ. 투 자 자 산	13,545	31,171	17,626	0.92
Ⅲ. 일 반 유 형 자 산	352,111	427,083	74,972	12.65
Ⅳ. 주 민 편 의 시 설	391,209	403,677	12,468	11.96
Ⅴ. 사 회 기 반 시 설	2,115,682	2,007,674	-108,008	59.48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487	4,969	-518	0.15
부 채	49,018	18,126	-30,892	
Ⅰ. 유 동 부 채	36,664	8,827	-27,837	48.70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2,354	9,299	-3,055	51.30
순 자 산	3,224,186	3,357,062	132,876	
Ⅰ. 고 정 순 자 산	2,832,910	2,840,800	7,890	84.62
Ⅱ. 특 정 순 자 산	29,131	28,926	-205	0.86
Ⅲ. 일 반 순 자 산	362,145	487,336	125,191	14.52

2018회계연도 말 광주시의 총자산은 3조 3,751억 8천 8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81억 2천 6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3,570억 6천2백만원이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5,006억 1천 6백만원(14.83%)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2조 8,745억 7천 2백만원(85.17%)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801억 5천 1백만원(2.37%), 단기금융상품 3,417억 7천 6백만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335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37억 1천 9백만원, 재고자산 7억 3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71억 9천 2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68억 4천 6백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311억 7천 1백만원(0.92%), 일반유형자산 4,270억 8천 3백만원(12.65%), 주민편의시설 4,036억 7천 7백만원(11.96%), 사회기반시설 2조 76억 7천 4백만원(59.48%), 기타비유동자산 49억 6천 9백만원(0.1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 비해 1,019억 8천 4백만원의 자산이 증가 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자산 1,054억 4천 6백만원(21.06%) 증가, 일반유형자산 749억 7천 2백만원(17.55%) 증가, 주민편의시설 124억 6천 8백만원(3.09%) 증가, 사회기반시설 1,080억 8백만원 (5.38%) 감소, 투자자산 176억 2천 5백만원(56.54%) 증가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88억 2천 7백만원(48.70%)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92억 9천 9백만원(51.30%)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1.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308억 9천 2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유동부채 278억 3천 7백만원 감소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다.

요약 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I. 사업순원가 (가 - 나)	415,750	434,920	19,170
II. 관리운영비	86,734	82,110	-4,624
III. 비배분비용	12,938	248,570	235,632
IV. 비배분수익	89,758	120,379	30,621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425,663	645,220	219,557
VI. 일반수익	563,091	640,202	77,11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37,428	5,018	-132,410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8회계연도 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4,349억 2천만원이고 관리운영비 821억 1천만원, 비배분비용 2,485억 7천만원 및 비배분수익 1,203억 7천 9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6,452억 2천만원이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402억 2백만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광주시의 재정운영결과는 50억 1천 8백만원이다.

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비 용 총 계	752,717	1,031,368	278,651
I. 인 건 비	96,381	106,040	9,659
II. 운 영 비	215,532	248,542	33,010
III. 정 부 간 이 전 비 용	17,691	24,277	6,586
IV. 민 간 등 이 전 비 용	363,010	362,625	-385
V. 기 타 비 용	60,103	289,884	229,781
수 익 총 계	890,145	1,026,350	136,205
I. 자 체 조 달 수 익	424,463	387,856	-36,607
II. 정 부 간 이 전 수 익	464,607	603,213	138,606
III. 기 타 수 익	1,075	35,281	34,206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37,428	5,018	-132,410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060억 4천만원(10.28%), 운영비 2,485억 4천 2백만원(24.10%), 정부간이전비용 242억 7천 7백만원(2.35%), 민간 등 이전비용 3,626억 2천 5백만원(35.16%), 기타비용 2,898억 8천 4백만원(28.11%)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878억 5천 6백만원(37.79%)이고, 정부간이전수익 6,032억 1천 3백만원(58.77%), 기타수익 352억 8천 1백만원(3.44%)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은 1조 313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86억 5천 1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96억 5천 9백만원(9.11%)증가, 운영비 330억 1천만원 (13.28%) 증가, 정부간이전비용 65억 8천 6백만원(27.13%) 증가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

수익은 1조 263억 5천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3,878억 5천 6백만원 으로 전년에 비해 366억 7백만원 감소 하였으며, 정부간이전수익은 6,032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86억 6백만원 증가하였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50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24억 4천 6백만원 감소 하였다.

5. 성과보고서

광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광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5개) - 정책 사업목표(74개)-단위 사업(15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4개의 정책 사업목표와 1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단위: 건,%)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5	74	152	124	28	82
의회사무국	1	1	1	1	0	100
기획예산담당관	1	1	3	2	1	67
감사담당관	1	1	3	2	1	67
공보담당관	1	1	4	4	0	100
자치행정국	1	12	22	18	4	82
희망복지국	1	11	27	21	6	78
문화교육관광국	1	7	15	14	1	93
경제환경국	1	12	16	14	2	88
안전건설국	1	9	15	12	3	80
도시주택국	1	7	16	16	0	100
보건소	1	3	11	7	4	64
농업기술센터	1	4	9	8	1	89
시립중앙도서관	1	1	2	0	2	0
청소년수련관	1	1	2	2	0	100
차량등록사업소	1	1	4	2	2	50
읍면동사무소	0	2	2	1	1	50

광주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등 4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50%, 시립중앙도서관은 0%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8,022,534	145,597	7,269,015	899,116
일반회계	7,359,713	-	7,103,639	256,074
특별회계	96,025	-	14,808	81,217
의료급여기금	20,013	-	908	19,105
주민소득지원사업	76,012	-	13,900	62,112
기 금	566,796	145,597	150,568	561,825
자활기금	566,796	145,597	150,568	561,825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911만 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9,913,747	0	29,913,747	0	0
일반회계	18,057,747	0	18,057,747	0	0
특별회계	11,856,000	0	11,856,000	0	0
상수도공기업	11,856,000	0	11,856,000	0	0
하수도공기업	0	0	0	0	0

검사결과 2018년도 채무 전액상환으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유재산

2018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905,827,639	110,070,910	34,187,079	1,981,711,470
행정 재산	공용재산	343,894,199	10,747,754	5,923,743	348,718,210
	공공용재산	1,388,741,514	92,592,945	24,994,420	1,456,340,039
	기업용재산	42,714,594	1,006,757	5,846	43,715,505
	보존재산	4,021,722	8,196	0	4,029,918
	소 계	1,779,372,029	104,355,652	30,924,009	1,852,803,672
일반재산		126,455,610	5,715,258	3,263,070	128,907,798

검사결과,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58억 8,383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9,817억 1,147만원이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1,053	143	37	1,159
금 액	12,268,834	1,337,965	566,460	13,040,339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7억 7,150만 5천원이 증가한 130억 4,033만 9천원으로,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미니버스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하였다.

VI. 주요 지적사항

1. 특별회계 정비 필요

① 문제점

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세출내역 없음”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19.1.4일 폐지)

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필요”

② 현황

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

⇒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461,303	0	0	1,461,303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2016년 지출액	2015년 지출액	비고
0	0	0	28,792	민간융자금

③ 개선 및 권고사항

가.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이 없음. 이는 별도 자금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특별회계 지속여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2008. 3. 28일 폐지된 조례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관련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관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폐지된 상위법을 모범으로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정비를 요구함.

2.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①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의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비 고
예산현액(A)	1,101,515	961,684	745,137	
세출결산액	875,862	796,532	596,950	
이월액(B)	185,141	133,374	131,502	
증감액	51,767	1,872	78,719	
비율(B/A)	16.8	13.9	17.6	

2018 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1,767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2.9%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2016년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71	33,463	50	23,263	57	12,720	21	10,200
사고이월	32	4,119	17	3,628	18	3,713	15	491
계속비이월	112	147,559	81	106,483	59	115,069	31	41,076
합 계	215	185,141	148	133,374	134	131,502	67	51,767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생활체육 공원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예산이월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

② 개선 및 권고사항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의 지연, 보상협의의 지연, 공사 기간 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말 자금교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 감독이 필요함.

시설비의 경우 보상 및 민원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시 정확한 예산의 조직-사업-통계목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증액 및 감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산의 이월 등 예산제도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또한, 공사의 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중장기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 과다지출 등 재정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적게 받는 경우 사업 진행이 늦어지므로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중장기 사업의 경우 예산소요 급증에도 유동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기간 지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낭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① 문제점 및 현황

⇒ 도로관리과의 ‘교량내진성능보강사업’은 노후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400,000	453,000	853,000	316,293	536,707

전년도 이월액보다도 지출액이 적은 경우로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함. 결과적으로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규모가 있는 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적절한 이월과 불용으로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해야 할 것임.

4.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필요

① 문제점 및 현황

⇒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전액 불용사업은 38건 836,739천원임.

(단위 : 천원)

연 번	부 서 명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 고
계	39건		836,739	0	746,739	
1	의회사무국	의정활동비	4,000	0	4,000	
2	자치행정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4,500	0	14,500	
3	회 계 과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5,600	0	5,600	
4	민원봉사과	대민봉사행정추진	100	0	100	
5	희망복지과	아동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	1,000	0	1,000	
6	여성보육과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2,250	0	2,250	
7	노인장애인과	공공휴건 활동비용 지원	1,119	0	1,119	
8	평생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0	0	2,000	
9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지원	400	0	400	
10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1,250	0	1,250	
1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109,000	0	19000	90백만원 이월
12	자원순환과	국도대청결운동	2,000	0	2,000	
13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430,081	0	430,081	
14	농업정책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200	0	200	
15	농업정책과	지역푸드플랜 수립	2,000	0	2,000	
16	농업정책과	아침 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445	0	445	
17	농업정책과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600	0	600	
18	농업정책과	SI구제역 방역비	1,000	0	1,000	
19	산림농지과	공공산림 가꾸기(자치단체자본)	2,150	0	2,150	
20	산림농지과	나눔목공소 조성 및 관리	12,000	0	12,000	
21	산림농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1,250	0	1,250	
22	산림농지과	FTA 피해보전직불(행정비)	1,321	0	1,321	
23	산림농지과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00	0	2,000	
24	산림농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1,034	0	1,034	
25	산림농지과	산림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1,000	0	1,000	
26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사업	500	0	500	
27	안전총괄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000	0	1,000	
28	건 설 과	남한산성천 노후제방 정비	20,000	0	20,000	

연 번	부 서 명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 고
29	도로사업과	하오항~부항리간(리도201호선) 도로확보장공사	90,799	0	90,799	
30	도로사업과	소송관리 업무추진	800	0	800	
31	교통정책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지원	115,920	0	115,920	
32	도시사업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4,400	0	4,400	
33	토지정보과	대민행정 서비스구현	500	0	500	
34	보건행정과	공공보건사업 운영	1,000	0	1,000	
35	보건행정과	공공보건사업 운영	1,120	0	1,120	
36	건강증진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00	0	400	
37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	1,000	0	1,000	
3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운영	1,000	0	1,000	

⇒ 일반회계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3억이상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연 번	부 서 명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 고
계	8건		134,401,687	124,704,677	9,697,010	
1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12,010,154	11,694,375	325,779	
2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4,542,413	4,215,798	326,615	
3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430,081	0	430,081	
4	도로사업과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중로3-3호선)도로개설사업	2,565,932	1,793,148	772,784	
5	자치행정과	기타직보수	6,215,113	5,409,932	805,181	
6	교통정책과	운수업체지원	47,580,473	46,714,240	866,233	
7	회계과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3,943,491	1,108,569	2834,922	
8	자치행정과	인건비	57,104,030	53,768,615	3,335,415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득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잔액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예산배정기관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 거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비교부에 있어 시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국비예산 책정시 시비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국·도비 보조금사업 예산반영 철저

① 문제점 및 현황

⇒ 2018 회계연도 국·도비 세입예산액 대비 자금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A)	교 부 액(B)	차액(A - B)	비 고
계	249,132,431	247,678,002	<u>1,454,429</u>	
국비(국고보조금)	155,246,252	154,352,230	894,022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471,111	11,471,111	0	
국비(기금)	7,955,675	7,952,063	3,612	
도비	74,459,393	73,902,598	556,795	

⇒ 세입예산액과 실제 보조금 교부액의 차액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액 발생 사유					
국비	부서명	사업명	세입예산액	교부액	차액	사유
	계	4개과			-894,022	
	건설과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00,000	383,000	-817,000	총사업비 확정일이 '18.11.5. 예산미반영(이월/미교부)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106,080	24,413	-81,667	목표치대비 사업대상자 감소
	농업정책과	FTA피해보전작물 및 폐업지원 행정비	0	4,000	4,000	예산 미편성
	기술보급과	도양개량제 지원	58,845	59,490	645	확정내시금액 보다 과다교부
국비 (기금)	부서명	사업명	세입예산액	교부액	차액	사유
	녹색환경과	석면피해구제급여	64,908	61,296	-3,612	매달교부(예측 어려움)
도비	부서명	사업명	세입예산액	교부액	차액	사유
	계	7개과			556,79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1,610	1,855	245	변경내시 미반영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75,874	68,287	-7,587	변경내시 없이 과소교부
	건설과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800,000	255,333	-544,667	총사업비 확정일이 '18.11.5. 예산미반영(이월/미교부)
	건설과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15,890	17,280	1,390	변경내시 미반영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7,956	1,831	-6,125	목표치대비 사업대상자 감소
	농업정책과	아침간편식지원 공공일자리	132	0	-132	목표치대비 사업대상자 감소
	기술보급과	도양개량제 지원	14,686	14,767	81	확정내시보다 추가교부

⇒ 이 중 국도비 사업인 건설과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시설비)의 예산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2019년 집행액
계	2,219,299	638,333	487,938	1,681,361	7,239
국비	1,200,000	383,000	290,541	884,459	3,808
도비	800,000	255,333	191,604	583,396	3,431
이월액	219,299	219,299	5,793	213,506	0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없이 사업비를 이월시켰음.

③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시달된 보조금 금액 통보공문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시달 되면 간주처리 후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금액과 보조금시달 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년도 통보된 보조금 금액보다 당해연도 교부시달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음.

⇒ 2018회계연도 광주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예산액)보다 많이 시달된 +허수예산과, 적게 시달된 -허수예산을 절대치로 합하면 총 허수예산은 -1,454백만원이 된다.

여기서 -허수예산은 예산서에는 존재하나 현금이 없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 +허수예산은 예산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금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통계처리 방법은 중복됨이 없이 순계처리 요령에 의하도록 한 점과 「예산총칙」 제9조(간주처리)에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한 내용을 활용하여 보조금의 시달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현액과 보조금수령액이 일치하도록 정산 간주처리(증감 간주처리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겠음.

6. 각종 기금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

①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시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현황

(단위 : 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기금관리			예금은행
		보통예금	정기예금	통합관리기금	
계	44,935,199,157	7,499,654,867	6,256,043,290	16,630,701,000	
통합관리기금	16,694,396,192	8,174,902	2,137,421,290	-	농협은행
보훈기금	1,553,553,048	2,513,048	-	1,551,040,000	농협은행
자활기금	1,726,847,528	63,147,528	-	1,663,700,000	농협은행
양성평등기금	3,151,957,106	11,957,106	-	3,140,000,000	농협은행
노인복지기금	1,746,752,979	472,979	-	1,746,280,000	농협은행
체육진흥기금	660,369,966	5,039,966	-	655,330,000	농협은행
식품진흥기금	701,721,079	251,721,079	-	450,000,000	농협은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430,982,065	1,430,982,065	-	6,000,000,000	농협은행
재난관리기금	9,089,255,926	5,702,656,926	3,386,599,000	-	농협은행
농업인육성기금	1,426,252,108	1,901,108	-	1,424,351,000	농협은행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11,160	21,088,160	732,023,000	-	농협은행

각종 기금의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등을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세수 증대를 위해 집행 시기별로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75억여원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각종 기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지출시기 등을 판단, 조기집행 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권고함.

7. 고충민원 과다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재정력 낭비

① 현황 및 문제점

⇒ 소송 및 진정 현황 (2018년도)

(단위 : 건)

구분	계	주택, 건축	도시, 건설	도로, 교통	산림, 농지	상,하수도	노인, 복지	환경	읍,면
소송(행정)	126(76)	16	51	28	17	7	2	4	1
민원(진정)	1047	347	205	127	64	84	42	26	152

⇒ 소송 관련 예산집행 현황

- 소송판결(패소) 등에 따른 구상금 (소송비용) 지급 : 140,577천원(28건)
- 소송 관련 예산 지급(착수금, 승소사례금, 수수료) : 152,257천원(105건)

⇒ 행정의 부당한 처리 등(고충 민원) 행정작용에 의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손실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판 등 법률에 따르지 않고 사전적 조치로 구제할 수 있는 광주시 시민적 권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행정구제)가 제정되어 있음.

(시민이 시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시민적 권리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조사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고충 민원에 대한 중재·시정 권고, 조정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도입)

⇒ 위와 같은 진정, 소송 등 1,173건의 유형은 다르며 원인발생에 법적, 제도적인 문제와 행정처리의 착오 등 여러 형태로 발생되지만 민원과 소송 등은 이해 당사자와의 치료적 소통 미진에서 부터 시작됨.

그럼에도 광주시는 이같은 민원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도

없으며 또한 행정구제 제도인 “광주시 시민적 권리 위원회 제도”가 2017년에 조례로 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원회 위원조차도 구성 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제도를 활용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 제시등 행정력 조치가 미진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 광주시는 소송 민원에 대하여 우선적 이해 당사자와의 치료적 소통 방법인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선행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한편,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민원이 이 제도권(시민적권리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더 한층의 행정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함.

8. 민생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등 시책추진 미흡

① 현황 및 문제점

가. 민생 관련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 광주시는 청년 실업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자치 입법 조례로 ▲광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 지원조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시 소재 기업생산제품판매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 하였으며,

- ⇒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 ⇒ 시민의 건강증진과 위급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지원조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시설 관리 및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음.

나. 민생 (경제 등)관련 주요시책 예산(집행) 현황(전액시비)

- ⇒ 청년실업 대책(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등 6개 조례 관련 : 15,000천원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결혼. 출산지원, 임신·양육·보육·지원 사업 등): 117,244천원
- ⇒ 미세먼지 시책지원 (국도비 부담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예산 지원) : 없음
- ⇒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지원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권장 시설관리 예산지원) : 없음
- ⇒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관련 등 조례는 관계법 등을 근거로 광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써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시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광주시는 관련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연관성 없이 예산을 편성.
- ⇒ 따라서, 인구36만이 넘는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지원센터 미설치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와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권장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지원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 도비 보조 예산에 따른 자부담 예산으로 학교, 유아원,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구입 예산만을 편성되어 있는 실정임.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살리기, 시민의 건강증진 등 관련 조례에 의한 중, 장기계획의 우선 수립과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함.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자리 센터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5	74	152	124	28	82
의 회 사 무 국	1	1	1	1	0	100
기획예산담당관	1	1	3	2	1	67
감 사 담 당 관	1	1	3	2	1	67
공 보 담 당 관	1	1	4	4	0	100
자 치 행 정 국	1	12	22	18	4	82
희 망 복 지 국	1	11	27	21	6	78
문화교육관광국	1	7	15	14	1	93
경 제 환 경 국	1	12	16	14	2	88
안 전 건 설 국	1	9	15	12	3	80
도 시 주 택 국	1	7	16	16	0	100
보 건 소	1	3	11	7	4	64
농업기술센터	1	4	9	8	1	89
시립중앙도서관	1	1	2	0	2	0
청소년수련관	1	1	2	2	0	100
차량등록사업소	1	1	4	2	2	50
읍면동사무소	0	2	2	1	1	50

- ⇒ 광주시의 성과보고서 목표 등 내용을 살펴보면 총 15개 부서의 7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24개, 미달성 28개, 달성률 82%로 나타나 있으며, 25개지표 중 미달성이 28개의 결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같은 성과지표 목표달성 수치로는 성과보고의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됨.
- ⇒ 또한 지표수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이며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산출량 (홍보, 교육, 회의 개최, 협의, 도로개설, 단속 등 건수)을 산출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에 부합되지 않는 측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치에 치우쳐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자료를 근거로 한 예산 조치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목적은 일하는 프로세스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눈꺼풀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에 의한 성과를 측정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임.
- ⇒ 따라서, 성과보고서운영에 있어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적 성과지표 목표 달성자료를 근거로 한 예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 또한, 광주시 기획업무 규칙은 지침으로 대체 되어 사용하고 있음으로 동 규칙은 폐지조치 하시기 바람.

10.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행사(보조금) 예산집행 부적정

①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광주시 왕실도자기 축제 행사 추진 : 광주시왕실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 예산지원(집행) : 419,400천원
- 광주시는 왕실도자기 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왕실도자기 축제 추진(지원)을 위한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왕실도자기 축제행사 업무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광주시장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간사와 서기는 광주시 기업지원과장과 담당 팀장으로, 광주시에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예산을 2015년부터 직접 집행하여 왔음.

【경기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 지원】

- 예산지원(집행)
- 광주시는 경기도재단법인 세계 도자기 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광주시 재단법인 세계 도자기 엑스포 지원조례”를 제정(2003년 7월 7일)하여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광주시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란” 광주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광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의 적용대상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에는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직접 주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를 운영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위반한 것임.
- 광주시가 경기도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재단법인 세계 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법인)은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으로 2009.12.31.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광주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존치하며 사용하고 있음.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 광주시는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및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행사에 관하여 행사운영비 등의 보조금 예산을 광주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조례는 개정토록 하고, 광주시 보조금 심의 위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함.
- ⇒ 관련 조례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제3조,제4조, 제8조) 및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명칭 등)개정이 요구됨.

12.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불합리

①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별 심의 대행

-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지역 SOC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특별회계 및 공기업, 타 기금 등에 대한 자금의 용자 ▲통합기금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 또한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 사업을 심의 ▲신규 투자사업 등을 심사토록 규정 되어 있으나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등의 업무를 심의하는 등 3개 위원회의 업무를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하며 (광주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제2조)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 구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서면심의 21건

-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1차부터 9차에 걸친 심의회 중 5회에 걸쳐 통합관리기금 결산 및 운용계획 변경 지방재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안)의 적정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폐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용역과제 사전심의,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건 등 21건을 서면으로 대체 심의를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이주민 대상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사업자 선정과 중소기업 제품 국내,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사업자 선정, 팔당 수계 정화활동 사업자 선정을 서면심의 내역 대체

⇒ 지적사항

- 광주시의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의에서 관장한 것은 예산의 편중과 사업의 배분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광주시심의위원회는 광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준용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광주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위원과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각각 위촉되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 행정행위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의 제척 위원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 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인은 배제 되도록 한 지방재정법등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또한 일부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목적의 전문성에서 다소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광주시의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위원회로써 업무의 중요성과 과중성을 검토하여 볼 때 실질적이며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므로,
- ⇒ 광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분리하여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됨.
- ⇒ 또한, 관련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모 등의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며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함.

13.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①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체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이행강제금 현황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480	1,663,182	443	1,449,509	37	213,645
무허가	116	664,360	96	521,243	20	143,117
위법 시공	46	408,106	43	356,491	3	51,615
무단 용도 변경	17	439,264	16	435,428	1	3,836
기 타	301	151,452	288	136,347	13	15,077

⇒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017~2018년)

(단위: 천원)

관련법	부과		징수		체납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옥외광고물 관리법	67	769,000	31	265,000	36	504,000	

광주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근거로 광주시 건축조례(제40조)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시 건축조례에 누락되어 있음.

⇒ 문제점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부과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체납된 건축물 및 불법(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징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광주시의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를 살펴보면 각종 포스터, 플래카드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넘쳐나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나 플래카드는 아파트 분양, 정치적인 목적과 각종 단체 등에서 단속에 관계치 않고 부착되는 실정에서 단속 실적과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함.
-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에 관련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조항임.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광주시 건축조례 40조 개정 후 해당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확대하여 위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관련조례(제2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규정은 폐지토록 개정

14. 국제교류(자매결연) 추진 부실

① 현황 및 문제점

⇒ 자매결연 현황 국제교류 현황

교류유형	교류국가(도시)	교류기간	교류분야
자매결연	중국(쯔보시)	2002~2016년	경제, 문화, 체육, 인적교류(공무원, 청소년)
우호교류	몽골(도르노고비도)	2000~2004년	경제, 문화교류 등
	중국(심양시 파쿠현)	2003~2004년	경제, 문화, 농업교류 등
	호주(배서스트시)	2004년	경제교류

- 광주시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할 시에는 면적·인구·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 산업·지역 특성의 상호 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그리고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 중국(쯔보시)과의 자매결연은 의회 승인 없이 2002년도까지 추진하다 2003년도에 광주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2016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국제정세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로 2016년 12월 이후 교류 중단 되었으나 최근 실무진 간 연락재개 및 양 도시 간 교류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 몽골(도르노고비도) 중국(심양시 파쿠현) 호주(배서스트시)등 3개 도시와의 우호 교류업무는 광주시의회 승인 없이 추진하다 아무런 조치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 이처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의 추진에 있어 내실화 부족 등으로 국제교류·협력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음.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 사항을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기를 권장함.

15.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 미흡

① 현황 및 문제점

⇒ 주차장 설치 등 주차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주차장 조성공사(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 1,272 백만원
 -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 32개소(유료5개소, 무료 27개소)
 - 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거주자 우선 주차) 예산 : 100,000 천원
- 2018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사업은 실시하지 않았음.

⇒ 2018년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적사항 부 과		징 수		미수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8년	42,121	1,521,000	25,634	833,000	16,487	688,000	54%

⇒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추진 현황

- 광주시는 교통량증가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거주지에서 주차로 인한 분쟁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 광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2016.02.29)하여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음.
- 또한 2017년에 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보고서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교통시설 및 지역 여건 고려 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는 무리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시범지구1개소지정)하여야 한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

⇒ 문제점

- 2018년도 주정차 단속은 42,121건으로 월 단속 건수는 3,510건 (300일 기준 일 / 140건)으로 1,521,000천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징수율은 54%이며 미징수액이 688,000천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광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 27개소 전체가 전반적으로 주차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광주시의 거주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면서 자체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송정동 경화여고 인근 연립주택 지역, 경안 재래시장인근, 송정동 구시청사 사거리 인근지역, 장신 신학대학 진입 우회도로 등) 등은 일부 지역으로 위와 같은 소극적 용역 결과로는 지금 거주지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광주시는 2017년에 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거주자우선 주차)을 실시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시범적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한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음에도 2018년도에 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 하였음.

② 개선 및 권고사항

- 광주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검토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부지(하천,구거부지,이면도로 도로부지등)를 이용한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 등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주차분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소리없는 전쟁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광주시는 시민의 불편함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소극적인 용역 결과만 의존하지 말고 광주시가 직접 거주자우선 주차 실시지역 확대 조치와 공공용 부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행해 주시기 바람.
- 이와 같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차문제는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시작과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알림판, 구획선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함.

16. 광주시 청사건축(설계·시공) 및 관리부실

① 현황 및 문제점

⇒ 청사 건립 현황

- 부지면적(연면적) : 78,118m² (29,032m²)
- 건축공사 예산 : 50,643백만원 (2008. 2. ~ 2009. 4.)
※ 공사추진 방식 : 일괄입찰공사(턴키 공사)

⇒ 주요 하자 발생 및 조치

- 건물 누수, 옥외 계단침하, 전기통신 맨홀침수 등 912건
(하자기간 2009.4 - 2011. 4.)

⇒ 청사준공 후 시설물 개·보수(예산집행) 현황

구분	사업비(천원)	시설(설치) 개보수 내용
2009-2011	1,400,920	• 청사 보수공사 등 342건 및 LED채널사인 설치공사 등 28건
2012-2014	1,145,218	• 청사 LED채널사인 개선공사 등 25건 • 청사 장애인편의시설공사(2층) 등 18건
2015-2017	1,268,253	• 전동블라인드 설치공사 등 26건 • 청사 조정개선사업등 27건 사무환경 개선공사
2018	388,495	• 청사 기사대기실 설치공사 등 24건

⇒ 문제점

- 광주시 청사 건립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턴키공사로 추진하였음에도 시공 후 하자보수 기간에 912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처리하였으나, 하자 기간이 만료된 직후부터 지금까지(2009년~2018년) 매년 청사에 대한 보수 및 정비공사 예산(4,202,886 천원)이 집행되었음에도 향후 매년 시청사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가 요구되는 상태에서 2019년에도 추가적인 개선사업과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요 예산 1,925,110천원)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 건립 부실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광주시는 청사건립 시에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시급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청사에 하자 등의 발생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일괄 입찰공사(턴키공사)방식을 택하여 추진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사건물 특성(턴키공사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3항 등)의 하자 책임 기간에 연장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적 검토가 있었어야 했으며 또한, 하자 발생이 시작할 시점에 전문 업체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

② 개선 및 권고사항

청사의 전반적인 개보수, 증축 등의 종합적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